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21642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930,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지원

별지